■ 교육

## 스탠퍼드대, 공학기술 강의에 윤리학 추가



미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있는 명 문 스탠퍼드대가 공학기술의 급격 한 발전에 따른 사회적 책임 논란 과 관련, 향후 공학기술 강의에 윤 리학을 추가할 방침이다.

270억 달러의 발전기금을 가진 세계 최고 부자 고등교육기관인 스 탠퍼드대는 졸업 동문이 구글과 시스코,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세계적 기술기업들을 설립했으며 이들 기업은 아직 캘리포니아 팔 로 알토에 있는 대학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.

4일 '연합뉴스' 가일간 파이낸셜 타임스(FT)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 르면 스탠퍼드대 이사회는 이달 중 회합하고 공학기술 교육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 스탠퍼드대 내부 보고서는 최 근 '윤리와 사회 및 기술'에 초점 을 맞춘 이니셔티브와 저소득계층 의 교육접근 개선책을 건의했으며 이사회는 이의 이행에 따른 기금 조성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.

마크 테시어 라빈 스탠퍼드대 총 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"우리는 윤리와 기술진보의 영향에 대해 숙고 중"이라면서 "교육은 대학이

하고 수습은 사회가 맡게 해서는 안된다." 고 강조했다.

라빈 총장은 최근 페이스북 등 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누출과 게 시글 조작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서는 '7-10년 전에 선견지명이 있 었다면 도움이 됐을 것'이라고 말

페이스북 설립자인 마크 저커버 그는 스탠퍼드대 출신은 아니나 일 찍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채택한 것은 스탠퍼드대 출신들이었다. 저 커버그는 스탠퍼드대에 기부를 약 속한 바 있다.

의학과 경영학의 경우 대학들이 교과과정에 윤리학을 포함하고 있 으나 공학과 컴퓨터과학 분야는 기술적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.

라빈 총장은 대학이 새로운 전략 과 관련해 올가을 연구와 교수진 확보를 위한 기금을 배정할 것이라 고 밝혔다.

한편 스탠퍼드대는 이미 인종적 으로 다양한 학생층을 갖고 있으 나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받아들 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.

■ 법률 칼럼

## 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(1) I-601A waiver

미국에 입국할 때는 합법적인 비자로 여 권에 스탬프를 찍고 들어왔지만 스탬프에 찍힌 기간 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, 또는 미국에 밀입국 함으로써 입국 순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 된 사람들은 그러한 불법체류 기간이 6개 월 (180일)을 넘게 되면 미국을 출국하는 때에 'unlawful presence bar' 라는 법조항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. 이는 불법체류한 기간이 6개월 (180일)을 넘게 되면, 3년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고, 불법체류한 기 간이 1년이 넘게 되면 10년간 미국에 들어 올 수 없게 되는 조항입니다.

우리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(AOS; Adjustment of Status)의 가장 중요 한 자격요건은 1) 합법적인 미국 입국, 즉 유효한 비자로 공항이나 국경의 입국심 사대(Board of Entry)의 심사(Inspection) 를 거쳐 합법적으로 입국했어야 하며 2) 미국 입국 후, AOS신청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를 해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따라 서 밀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또한 미 국입국은 합법적이었으나 그이후 불법체 류를 하고 있는 사람도 같은 이유로 불가 능합니다.

하지만 이민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 될 수 있는 면제조항들이 있습니다. 우선 INA (Immigration and National Act) Sec tion 245(i)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(245(i) 는 다음주에 "불법체류자의 영주권신청: (2) 245(i)라는 제목으로 따로 설명하도 록 하겠습니다). 245(i)가 적용이 되지 않 는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신청 (I-601A: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of Inadmissibility) 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가족초청의 I-130 의 승인을 미국 내에서 받은 후,이 승인서 를 근거로 I-601A 신청을 해서 임시 면제 (Provisional Waiver)를 받은 후, 본국으로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최종 인터뷰를 거쳐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재입국할 수 있 습니다. I-601A waiver의 가장 중요한 조 건은 신청자가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 한 고통(Extreme Hardship)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

2016년 8월 말부터 이 I-601A가 확대 조정( 'Expansion' of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s of Inadmissibility) 되어 실효 중입니다. 확대된 I-601A waiver는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불체자 뿐 아니라,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 는 불체자도 포함하면서 그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된 것입니다. 또한 가족초청 이민 에만 제한 되어있지 않고 모든 이민 비자 category에 적용이 되어 취업이민, 종교이 민 등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 었습니다. 이러한 확대 조치를 통해 시민 권자인 부모를 통한 가족초청의 우선일자 (최소 5-6년)를 기다리고 있던 자녀들이 취업이민으로 방향을 바꾸어 I-140승인 을 받은 후, I-601A waiver를 통해 1-2년 안에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 습니다.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는 개인마 다 상황이 다르며, 충분한 증명을 위해서 는 사전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.

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, I-601A 면제조항이 확대되었다고는 하 지만, 여전히 수혜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 자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있는 '자녀들' 이 라는 것입니다. 즉,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부모들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들이 있더라도 이 면제조항을 신청할 수 없습 니다. 대신 시민권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 가족초청을 하면 Immediate Relative (IR)로 오래 기다리시지 않고 영주권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.

>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, P.C. www.skyuslaw.com young@skyuslaw.com TEL (714) 522-1033 6 Centerpointe Dr. #700 La Palma, CA 90623



천관우 변호사

서울고•연세대•법학박사

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

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

josephlaw1224@gmail.com

##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

"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."

이민법, 상법, 부동산법 전문

취업 영주권 상담 / DACA 연장접수

이민법

영주권 (취업 1,2,3순위 이민 - NIW, 국제적기업간부급, 간호사 포함,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, 종교이민) 각종 비이민비자 (H1B, R1, E2, E1, L1, F1, O, P, TN/TD비자 등), DACA, 601A Waiver, 245i 추방유예상담. J1 Waiver. 영주권 인터뷰. 재입국허가서. 영주권 재발급. 시민권 신청

부동산법

상법

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/강제퇴거명령(이빅션)/Title에 대한 분쟁-Quiet the title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분쟁 소송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
213-232-1655

OC Office 714-522-5220

6281 Beach Blvd., Suite 300, Buena Park, CA 90621

☎ 상담문의

LA 3600 Wilshire Blvd., #1227, Los Angeles, CA 90010 Office